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4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이종성・이 영・박성중

김석기 · 김용판 · 임이자

박대출・강기윤・이종배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에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의2.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
	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